

대구지방법원 2022. 9. 21 선고 2022나302440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대구지방법원 2022. 9. 21 선고 2022나302440 판결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1. 12. 21 선고 2020가단5685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단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촌

담당변호사 손병희

피고, 항소인 B

변론종결 2022. 8. 17.

판결선고 2022. 9. 21.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1. 12. 21. 선고 2020가단5685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D가 제1심판결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6. 20. 체결한 매매계약을 75,084,542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5,084,54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지영, 판사 윤남현, 판사 장래아